



영국 2006년 소비자신용법 (Consumer Credit Act 2006)의 개정

I. 새로운 소비자신용법의 개정

영국은 2006년 3월에 본문 71개조와 4개의 부칙으로 구성된 새로운 소비자신용법(Consumer Credit Act)으로 개정하였다. 2006년 소비자신용법의 목적은 1974년 소비자신용법을 개혁한 것이다.

즉, 본법을 통하여 영국 정부는 더 공정하고 경쟁적인 신용시장을 창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불공정한 대차(貸借)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권한을 주어 분쟁해결을 위한 더 효율적인 선택권을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소비자 권리와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공정한 행위를 보장함으로써 소비자 신용영업의 규제를 개선하며, 다양한 소비자 신용거래에 더 적절한 규제를 만든 것이다.

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산의 발전과 신용사회의 발전으로 본 법의 새로운 변화가 끊임없이 요청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의 통상산업부장관(the Secretary of State for Trade and Industry)은 2001년 7월에 1974년의 소비자신용법에 대한 검토를 선언한 바 있다. 이후 2003년 12월에 ‘공정, 투명, 경쟁 - 21세기 소비자신용시장’ (Fair, Clear and Competitive - The Consumer Credit Market in the 21st Century) 이라는 백서의 발표를 시작으로 1974년 소비자신용법의 개혁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새로운 소비자신용법안은 공식적인 검토과정을 통해 2004~5 회기에서 영국의회에 제출되었고, 2006년에 의회를 통과하였다.

II. 2006 소비자신용법의 개정 과정

영국에서는 이미 1974년에 소비자신용법(Consumer Credit Act 1974)이 제정되어 소비자철회권, 사전정보제공의무, 서면주의, 계약후 정보제공, 계약변경, 채무불이행 및 계약해제, 담보, 신용정보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통하여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법을 통하여 신용을 보호받고 권

III. 2006 소비자신용법의 목적

2006 소비자신용법은 소비자신용계약 및 소비자 할부계약의 규제, 계약체결 후 채무자나 구매자에 정보의 제공,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공정한 관계, 소비자신용 및 할부영업 등 그 밖에 부수적 신용영업에 대한 인가, 공정거래청(Office of Fair Trading)의 권한, 공정거래청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2000년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에 따른 금융 옴부즈만 서비스(Financial Ombudsman Service)의 관할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V. 2006 소비자신용법의 주요 내용

2006 소비자신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신용계약이나 소비자할부계약 그 밖의 부수적 신용계약 모두를 규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74년 법에 규정되어 있던 금전적 제한 범위를 삭제하였고, 영업규모에 따른 면책도 규정하고 있다. 즉 채무자나 할부구매자의 영업을 목적으로 체결된 2만 5천 파운드를 넘는 신용계약과 할부 구매계약은 규제가 면제된다.

둘째, 소비자신용 및 소비자할부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인가와 이와 관련한 공정거래청의 기능 및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채무자에게 채권자와의 불공정한 관계를 변경시킬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인가된 영업과 관련한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V. 2006 소비자신용법의 포괄범위

2006 소비자신용법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① 소비자신용계약 및 소비자 대차계약의 규제
- ② 계약체결 이후 신용자 및 채무자의 정보제공사항

- ③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불공정한 관계
- ④ 소비자신용 및 대차업과 기타 부수적인 신용사업의 인가
- ⑤ 소비자신용 및 대차업과 기타 부수적인 신용사업에 관련하여 마련된 영국 공정거래청의 권한
- ⑥ 소비자신용 및 대차업과 기타 부수적인 신용사업에 관련된 영국 공정거래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 ⑦ 금융서비스 시장법 2000에 따라 설치된 금융 옴부즈만 제도의 관할 범위의 확대

또한 1974년 법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정하였다.

- ① 스코틀랜드에서 채권자의 소명기회를 주기 위하여, 1971년 스코틀랜드 Sheriff Court 법(Sheriff Courts (Scotland) Act 1971)과 1980년 스코틀랜드 변호사법(Solicitors (Scotland) Act 1980)의 개정
- ② 불공정 관계에 대한 조치를 위한 본법 규정들에 따라서, 1985년 스코틀랜드 파산법(Bankruptcy (Scotland) Act 1985), 1986년 파산법(Insolvency Act 1986) 그리고 1989년 북아일랜드 파산 명령(Insolvency (Northern Ireland) Order 1989)에 대한 개정
- ③ 공정거래청의 권한과 관련한 본법의 규정에 따라 2001년 형사재판 및 경찰법(Criminal Justice and Police Act 2001)의 개정
- ④ 소비자신용 항소심판소(Consumer Credit Appeals Tribunal)의 설치와 관련된 본법 규정에 따라서, 1992년 심판소 및 조사법(Tribunals and Inquiries Act 1992)의 개정
- ⑤ 금융 옴부즈만 제도의 범위 확대에 따라 2000년 금융서비스 시장법의 개정

VI. 2006 소비자신용법 본문규정의 구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법은 총 7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의 부칙을 포함하고 있다.

- 1974년 소비자신용법에 따라 규율되는 계약

- 제1조 '개인'의 정의
- 제2조 금융한계등의 제거
- 제3조 채무자 및 임차인의 이율제한에 대한 예외
- 제4조 사업에 관한 예외
- 제5조 제1조 내지 제4조에 따른 변경

- 규제대상 신용계약과 관련하여 제공되어야 할 사항

- 제6조 고정금액 신용계약과 관련하여 제공되어야 할 사항
- 제7조 기타 사항에 관련된 규정

- 규제대상 계약의 불이행

- 제8조 지체 및 채무불이행에 관한 공정거래청의 정보조사서
- 제9조 고정금액 신용계약에서 지체금에 관한 통지 등
- 제10조 당좌계정 신용계약에서 지체금에 관한 통지
- 제11조 지체통지의 실패
- 제12조 채무불이행의 통지
- 제13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자
- 제14조 불이행의 통지
- 제15조 규제대상 계약의 강제집행
- 제16조 기간
- 제17조 판결확정채무에 관한 지급이자 등
- 제18조 '불이행 금액'의 정의

- 불공정 관계

- 제19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불공정한 관계

- 제20조 불공정 관계에 대한 법원의 권한
- 제21조 1974년 법 제140A조 및 제140B조의 해석
- 제22조 불공정 관계에 대한 기타 규정들

- 인가를 요하는 사업 및 인가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규제

- 제23조 소비자신용 사업 및 소비자대차 사업의 정의
- 제24조 채무관리 등
- 제25조 신용정보 서비스
- 제26조 비인가자의 계약에 대한 강행규정 등

- 인가신청 및 인가적합성 유지 등

- 제27조 인가신청자에 대한 비용부과 등
- 제28조 기본 인가에 대한 신청
- 제29조 기본 인가의 발행
- 제30조 적합성 평가에 대한 지침
- 제31조 기본 인가의 변형
- 제32조 기본 인가자의 사업준비
- 제33조 제27조 내지 제32조에 따른 개정

- 인가 기간 및 비용 부과

- 제34조 한정 및 비한정적 인가
- 제35조 비한정 인가에 대한 비용
- 제36조 비한정 인가에 대한 비용 지급기간의 연장
- 제37조 비한정 인가에 대한 비용 지급의 불이행

- 인가 규제에 관한 공정거래청의 기타 권한

- 제38조 공정거래청의 인가자에 대한 요건 부과 권한
- 제39조 공정거래청의 감시기관에 대한 요건 부과 권한
- 제40조 요건에 관한 기타 규정
- 제41조 요건 관련 절차
- 제42조 요건에 관한 지침
- 제43조 요건에 관한 개정



- 정보와 관련된 권한과 의무

- 제44조 신청자에 의한 정보 등의 제공
- 제45조 정보 등의 변경 의무
- 제46조 공정거래청의 일반적인 정보요구 권한
- 제47조 공정거래청의 목적물 접근 요구 권한
- 제48조 영장에 근거한 목적물 입장
- 제49조 정보요구에 대한 불이행
- 제50조 공정거래청 외의 강행권한 있는 자
- 제51조 정보에 관한 개정

- 민사적 벌칙

- 제52조 공정거래청의 민사적 벌칙 부과권한
- 제53조 민사적 벌칙 부과에 관한 기타 규정
- 제54조 민사적 벌칙 관련 정책에 관한 공고

- 항소

- 제55조 소비자신용 항소심판소
- 제56조 소비자신용 항소복심판소에 대한 항소
- 제57조 소비자신용 항소복심판소로부터의 항소
- 제58조 항소에 관련된 개정

- ombudsman 제도

- 제59조 소비자신용 인가자에 적용할 금융서비스
ombudsman 제도
- 제60조 ombudsman 제도에 대한 비용
- 제61조 ombudsman 제도 관련 개정

- 기타 규정

- 제62조 공정거래청의 사업 감독
- 제63조 1974년 법 제101조의 비적용
- 제64조 공정거래청의 결정
- 제65조 공정거래청의 수령액

- 최종규정

- 제66조 비용규정
- 제67조 해석
- 제68조 개정
- 제69조 이행규정 및 제외
- 제70조 삭제
- 제71조 축약 명칭, 발효 및 연장

VII. 맺음말

영국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소비자신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소비자신용에 관한 체계적인 보호입법의 제정을 통해 신용카드 이용자를 포함한 소비자신용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을 기피하고자 하는 금융기관들의 고객 선호변화로 기업금융이 크게 위축되었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가계신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소비자신용 특히 신용카드 이용자의 피해가 급증하였다.

이러한 국내 상황 속에서, 최근 이루어진 영국의 소비자신용법의 제정과 그 내용은 우리나라의 관련 입법 및 제정 및 개정에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특히 소비자 신용 이용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국내법 제정이 필요하다.

김 형 수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영국 주재 외국법제조사위원)